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도희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1년 12월 일
제 출 자 : 도희재, 전수곤, 김영래
배재만, 구교강, 김성우, 황숙희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의회 회의규칙 위임사항과 인용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14조, 제19조의2, 제25조, 제41조, 제70조 및 제82조)

나. 기록표결 원칙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41조)

다. 의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8조)

라.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 및 주민조례청구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2조의2, 안 제52조의3 및 안 제52조의4 신설)

마.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로 지방자치법에서 삭제된 규정 추가
- 의장의 위원회 출석발언 (안 제54조의2 신설)

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83조의2 및 안83조의3 신설)

사. 부적절한 용어 및 문장,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20조 등)

3. 조 례 안 : 붙 임

4. 입법예고기간 : 2021. 12. 17 ~ 12. 21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성주군의회 규칙 제 호

성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1조”를 “제83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 제63조 제1항”을 “법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단서 중 “연서”를 “찬성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법 제66조의2제1항”을 “법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회 부”를 “회부”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법 제15조의2제2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으로, “제52조제4항”을 “제52조4”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제11호 중 “표결 및 기명투표”를 “표결(이의유무표결 포함) 및 기명투표, 호명투표”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경 우”를 “경우”로 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9조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

제5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 및 제5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2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2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의4(주민조례청구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청은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일시, 장소 및 취지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④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대표자로 한다.

제54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9조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8장에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의정활동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상황은 의회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발의, 군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82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제2항”으로 한다.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일비·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83조의3(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83조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법 제72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 ---------- 찬성으----------.
제19조의2(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제19조의2(조례안예고) ① ---------- 법 제77조제1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생 략)	제20조(의안의 회부) ① (현행과 같음)
②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 부할 수 있다.	②---------- 회부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안건심의) ①·② (생 략)	제25조(안건심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본회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을 직접 심사할 때에는 제52조제4항에 따른다.	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52조4----------.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1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제4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삭 제>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1. 표결(이의유무표결 포함) 및 기명투표, 호명투표----------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 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④----------. ---------- ---------- ----------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부위원장과 ----------.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③ (생략)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52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신 설>	제52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52조의4(주민조례청구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청은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일시, 장소 및 취지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④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

	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대표자로 한다.
<신 설>	제54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② (생 략)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③---------- 부위원장이 ----------.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법 제91조----------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1조의2(의정활동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상황은 의회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

	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 4. 의안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발의, 군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법 제9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법 제95조제2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3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

	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일비·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83조의3(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인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도: 15일 이상
2. 시·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受理)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